

(참고: 간접노무비율, 기타경비율, 일반관리비율, 이윤율,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)

공사규모
(직접공사비)

공사기간

[간접노무비]

(직노) x 율

토목조경산업설비(토목)

[기타경비]

(재+노) x 율

토목조경산업설비(토목)

공사규모
(추정가격)

(재+노+경) x 율

토목조경, 산업·설비(토목)전문공사

[일반관리비]

(노+경+일) x 율

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

구분요율구분요율

토목공사(토건)0.40준설공사, 포장공사, 토공사, 비계구조물해체공사0.68

산업설비공사0.16상하수도설비공사, 수중공사, 보링그라우팅공사0.51

조경공사0.18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0.32

조경시설물설치, 조경식재공사, 도장공사, 철도케공사, 철강재설치공사0.16

그 외0.10

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
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압충별 건설기계 투입비용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[산업안전보건관리비]

□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

□ 도급자관급자재 포함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(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) x 1.2 중 작은 금액

50억 미만건축공사2.93토목공사3.09중건설공사3.43특수건설공사1.85

50억 ~ 500억 미만건축공사1.86토목공사1.99중건설공사2.35특수건설공사1.20

500억 이상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건축공사1.97토목공사2.10중건설공사2.44특수건설공사1.27

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(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,000억)건축공사2.15토목공사2.29중건설공사2.66특수건설공사1.38

[산재보험료](노) x 3.56

* 모든 건설공사 적용.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

[고용보험료](노) x 율
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요율

[1등급] 1400억 이상1.57

[2등급] 900억 ~ 1400억 미만1.30

[3등급] 570억 ~ 900억 미만1.13

[4등급] 370억 ~ 570억 미만1.06

[5등급] 220억 ~ 370억 미만1.03

[6등급] 140억 ~ 220억 미만1.02

[7등급] 고시금액 ~ 140억 미만1.01

7등급 미만1.01
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.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
※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
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10.)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0.)

[건강보험료][노인장기요양보험료][연금보험료]

(직노) x 3.545(건강보험료) x 12.95(직노) x 4.5
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 모든 건설공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)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

[퇴직금제부금비](직노) x 2.3
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

*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율을 적용

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,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표준 시정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

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산

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

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(직접공사비) x 율

공사규모(추정가격)요율

50억 미만0.081

50억 이상 - 100억 미만0.080

100억 이상 - 300억 미만0.075

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0.071

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0.068

터전·대안공사0.084

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
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
[공사이행보증수수료]공사규모(직접공사비)수수료

70억 미만[직공비×0.0141%]×공기(년)

70억 이상 - 120억 미만[100만원+(직공비-75억원)×0.0102%]×공기(년)

120억 이상 - 250억 미만[150만원+(직공비-130억원)×0.0077%]×공기(년)

250억 이상 - 500억 미만[240만원+(직공비-250억원)×0.0063%]×공기(년)

500억 이상[400만원+(직공비-500억원)×0.0050%]×공기(년)

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
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
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
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

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

주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

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

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자재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

* 건설공사의 종류

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

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

- [중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

- 고체방·담·공사 등 - 담·건설공사, 지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

-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-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

- 터널신설공사 등 - 도로, 철도, 지하철거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통로상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

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/야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

-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방공사업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

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건설공사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 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

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